

#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김부겸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3659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11. 7.

발의자 : 김부겸 · 송영길 · 임종성  
정재호 · 추미애 · 천정배  
박정 · 권칠승 · 고용진  
변재일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인 대응역량 및 전문성을 겸비한 외교인재의 교육·양성 및 중장기 외교정책의 연구·개발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국립외교원에 교수·부교수·조교수 등 전임교수요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국립외교원에 임용되는 조교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있고, 재임용 심사 시에는 다시 공개 채용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신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수 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음.

이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수요원을 확보하는 한편 교수요원의 성과관리 향상 및 연구능력 확충을 위하여 교수·부교수·조교수인 전임교수요원을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5조제7항 신설 등).

## 국립외교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외교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 중 “전임교수요원(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)의 정년은”을 “전임교수요원(경력교수는 제외한다)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, 그 정년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전임교수요원(경력교수는 제외한다)의 임용 및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「교육공무원법」(징계·소청에 관하여는 「외무공무원법」을 말한다)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전임교수요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일반직 전문경력관인 전임교수요원은 이 법 시행일에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교수요원 등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전임교수요원(경력교수 및 임기제공무원인 전임교수요원은 제외한다)</u>의 정년은 65세로 한다.</p> <p>⑤ · ⑥ (생 략)  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5조(교수요원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전임교수요원(경력교수는 제외한다)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, 그 정년은-----</u>.</p> <p>⑤ ·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<u>전임교수요원(경력교수는 제외한다)의 임용 및 보수 등 처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「교육공무원법」(징계·소청에 관하여는 「외무공무원법」을 말한다)을 준용한다.</u></p>